

가 정 통 신 문

"불법찬조금 근절"

대 향 중 제 2022 - 27 호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587 / 학교 홈페이지: www.daehung.ms.kr

교무실: 070-7097-0916,0917 / 행정실: 070-7097-0904 / 팩스: 행정실 031-312-9387 교무실 031-318-2173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문]

제3장 교복 및 두발

제1절 교복 규정

제7조(교복) 등·하교 시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단 코로나 상황 한시적 체육복 등교 허용)

1. 동복 착용:

-1학년: 재킷 교복 없음

-2, 3학년: 동복 깨킷 대신 동절기 한시적으로 사복 허용

단, 후두 집업(모자가 달려 있고,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든 상의)외 사복 착용 금지

- ※<u>우두티, 맨투맨티 착용 금지(우두티는 모자에 있는 끈을 쉬는 시간 서로 잡고 넘어져서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 맨투맨티는 이미 많은 부분 교복 이외에 겉옷을 허용한 만큼 입고 등교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도 바람)</u>
- 2. 순수복 작용:교복 바지(혹은 치마), 지정된 셔츠(혹은 블라우스), 가디건 필수
 - ※단, 체육복 입고 등교시 가디건 필수 아님
- 3. 하복 착용:생활복 상의, 체육복 바지(교복 바지, 교복 치마) 착용
- 4. ① 교복 변형 절대 금지(치마 주름, 길이)
 - ② 교복 착용 시기, 겉옷은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여 학생 자율에 맡김

제8조(명찰부착) 명찰을 교복 상의 주머니 커버에 부착. 교내에서 명찰을 주머니 밖으로 꺼내놓고, 학교 밖에서는 주머니 안으로 넣어서 개인정보를 보호. 분실 우려가 있는 체육복에는 왼쪽 가슴 부위에 박 음질하는 것을 권장.

제9조(신발) 반드시 실내화, 실외화 구분 착용

- 1. 실외화 : 운동화 착용 원칙
- 2. 실내화
 - ① 실내용 슬리퍼, 인색 실내와 건장(제육시간 제육관 수업)
 - ② 실내 반드시 실내화 착용(없을시 교육복지실 대여)
 - ③ 슬리퍼 신고 등·하교 금지

※크록스 신고 등교 금지, 실내화 착용 금지(안전사고 예방)

제2절 두발 규정

제12조(두발) 두발의 길이는 규제하지 않는다.

제13조(기타)

- 1. 파마와 염색(탈색)은 금지
- 2. 색조 화장, 마스카라, 매니큐어,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피어싱, 써클 렌즈 금지(단, 귀막힘 방지 투명 실리콘 귀걸이와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

2022. 3. 17.

대 흥 중 학 교 장